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1. 3 선고 2022가단115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3. 1.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1. 9.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1. 9. 15. 접수 제47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B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20. 10. 23. 채권자 C은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간을 2020. 10. 23.부터 2025. 10. 23.까지, 신용보증원금을 19,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② 2021. 2. 15. 채권자 C은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간을 2021. 2. 15.부터 2026. 2. 15.까지, 신용보증원금을 9,5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③ 2021. 9. 30. 채권자 D은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간을 2021. 9. 30.부터 2026. 9. 30.까지, 신용보증원금을 9,5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 D은행으로부터 각 자금을 대출받았다.

2) B는 2021. 12. 9.경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따라 2022. 2. 15. C은행에 28,701,823원을, 2022. 3. 18. D은행에 9,585,63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1) 피고는 B의 누나이다.

2) B는 2021. 9. 8.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1. 9. 15. 접수 제47785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B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향후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경주시 F에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9. 3. 7. 폐업하였고, 경주시 G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매출부진으로 대출금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C은행,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 경북신용보증재단, H은행에 대한 다수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실제로 그 이후에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B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 D은행에 대한 B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는바,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2)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아래와 같이 117,488,458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금액	증거
1	원고	38,287,458원	갑4-1, 4-2
2	I	3,550,000원	E 회신
3	J	2,412,000원	E 회신
4	K은행	171,000원	E 회신
5	D은행	500,000원	E 회신
6	C은행	1,500,000원	E 회신
7	소상공인진흥공단	10,000,000원	E 회신
8	L	2,479,000원	E 회신
9	H은행	17,312,000원	E 회신
10	경북신용보증재단	41,277,000원	E 회신
	합산액	117,488,458원	

그렇다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B에게 5,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대의원리금 5,6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7. 12. 29.경 동생인 B에게 5,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과 이자를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당시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와 피고가 친남매사이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가지는 채권이 3,800여 만 원 정도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5,000만 원을 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의 범위도 원고의 채권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경북신용보증재단도 사해행위취소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가단11534)를 제기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외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참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1. 9.

15. 접수 제47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대규

별지